

[별지 제23호서식] <개정 2005.8.4> (규칙 제37조제2항관련)

(○ ○ 방 송 사)

문서번호

시행일자

수 신 ○○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

제 목 후보자연설통보

년 월 일 실시하는 ○○선거(○○선거구)에 있어서 「공직선거법」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통보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.

방 송 시 설 구 분	방송시설명	후보자성명	방송일시 (부터~까지)	소요시간	비 고
텔레비전					
라디오					

(○○방송사의 장) 인

주

1. “(○○선거구)”란은 대통령선거,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,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.
2.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“후보자성명”을 “정당명 및 후보자성명”으로 고쳐 기재하여야 합니다.
3. “방송일시”란은 분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.
4. “비고”란에는 방송·방영권역을 기재합니다.